崔萬理 등 集賢殿 學士들이 올린 甲子 上疏文의 內容과 意味

김 주 필 (국민대)

I.서 언

1444년 2월 20일에 최만리 등 집현전 학사들이 올린 상소문은 일찍부터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하게도 매우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된 관심이었다.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라는 1443년 12월 30일자 실록 기사에 이어 1446년 9월 29일자 실록에 "訓民正音成"이란 기사가 나오자 1920, 30년대 학자들은 1443년에 창제한 훈민정음을 수정·보완하여 1446년에 완성하여 세상에 공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하여 1444년의 이 상소문은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집필의 대표자였던 최만리는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고루한 사대주의자로 낙인찍어 버렸다(최현배 1922, 김윤경 1938 등).

이러한 상황에서 '훈민정음'의 해설서인 <<훈민정음>>(1446)이 발견되고 이 상소문의 내용에도 언문이 창제된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을 알려주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 상소문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그 후 이숭녕(1958, 1976)에서 이 상소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성격을 밝히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이 상소문은 세종이 조선 한자음을 <<동국정운>>과 같은 인위적인 한자음으로 개혁하고자 하여 그것을 반대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져 최근에는 국어학사 관련 논의(최병선 2009, 민현식 2011 등)에서만이 아니라 국사학계(정다함 2009, 이원명 2011 등)에서도 한자음 개신을 반대한 것으로 널리 인정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상소문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과연 이 상소문의 핵심 내용이 한자음 개신을 반대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1444년 2월 16일에 중국의 운서인 <<운회>>의 번역 관련 모임이 있었고, 그 4일 후에 이 상소문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 상소문의 제3항에 한자음 개신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상소문을 읽은 세종의 반응 중에서 운서음 개신 관련 발언이 매우 강하여 이 상소문이 한자음 개신 사업과결코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조식으로 제시한 이 6개항은 각 조항마다 쟁점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조항에서 이두와 관련된 내용이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소문 전체를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만리 등 집현전 학사들이 1444년 2월 20일에 올린 상소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소문에서 쟁점으로 삼은 내용과 그 내용이 당시의 어문 정책이나 어문 생활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上疏文의 內容

1444년 2월 20일 최만리 등 집현전 학사들이 올린 갑자 상소문(이하 '이 상소문'이라 함.)은 서두와 상소 내용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신 등이 엎드려 보건대 諺文을 制作한 것이 지극히 신묘하여 만물을 창조하고 지혜를 운전함이 천고에 뛰어나지만, 신 등의 구구한 관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바가 있어 감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삼가 뒤에 열거하니 엎드려 聖栽하기를 바란다. <서두>1).

(1)은 이 상소문의 서두이다. 서두에서는 '諺文은 지극히 신묘하게 만들어졌지만 의심되는 바가 있어서 上疏를 한다.'고 상소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들이 상소문을 작성하기 전에 창제된 언문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숭녕(1958, 1976)에서는 이 상소문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한자음 개신을 반대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럼 상소 내용을 쟁점이나 요구 사항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①우리 조선은 조종 이래, 至誠으로 事大하여 한결같이 中華의 制度를 遵行하여 왔다. ②이제 同文同軌의 때를 當하여 諺文을 創作한 것은 보고듣기에 놀랍다. ③혹자는 언문이모두 古字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新字가 아니라 하지만 字形은 비록 옛날의 篆文을 본떴을지라도 用音合字는 모두 옛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데가 없다. ④(이러한 사실이) 중국에 흘러들어가 혹 非議하는 자가 있으면, 어찌 事大慕華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제1항>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①은 당시의 일반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대외 정책과 평소 세종의 언행³⁾으로 보아 ①은 쟁점으로 보기 어렵다. ②에서는 쟁점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글의 흐름을 전환하였다. ③에서 쟁점에 대한 필자들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쟁점은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어서 新字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글의 필자들이 보기에는 "諺文의 字形은 옛 篆字와 같지만 用音合字가 모두 옛 것에 반대되어 실로 의거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④에서는 ③의 문제가 사대모화에 미칠 영향을 제시하였다.

제1항에서는 한자[篆字] 중심의 문자관이 지배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언문의 문자론적 정통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중국 문자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許慎(후한, 58년~147년경?)의 <<說文解字>>에서는 상형이나 지사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글자[文]의 형태는 모두 공통적으로 의미로써 글자의 형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미는 그려진 사물의 형상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가령 '日, 月, 魚, 犬, 戈'은 모두 '畵成其物'의 方法으

¹⁾ 臣等伏覩諺文制作至爲神妙 創物運智 夐出千古. 然以臣等區區管見 尚有可疑者 敢布危懇 謹疏于後 伏惟聖裁.

²⁾ 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有駭觀聽. 儻曰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做古之篆文 用音合字盡反於古 實無所據. 若流中國 或有非議之者 豈不有愧於事大慕華.

³⁾ 조선조 초기의 대외정책(사대 외교)에 대해서는 이원명(2011), 사대와 관련된 세종의 평소 언행에 대해서는 이숭녕(1976), 김주원(2013) 등을 참조.

로 자형이 만들어진 상형자로서, 글자의 형태로 그려진 사물의 특성을 통하여 해당 글자의 의미를 추출하고, 따라서 의미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의 형상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므로 글자의 형상은 그 글자의 형태로 그려진 사물에 의거한다. 가령 '日'은 '해', '月'은 '달', '射'는 '활 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는 모양'을 그린 것으로서 이들 각 글자의 의미는 각각 '해', '달', '화살을 쏘다'이다4). 이와 같이 상형자의 형태에는 그 형태로 그려진 사물이나 관념이 글자의 의미가 되는 바, 자형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1443년 훈민정음 창제 기사에서는 언문의 특성을 '字做古篆'이라고 설명하였다. "언문은 모두 古字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상소문의 필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자형은 같지만 언문의 용음합자는 모두 옛것에 반대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표의문자인 篆字에서 의미를 배제하고 표음문자인 언문에서 말소리를 배제하여 양자의 자형만 비교하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 그것은 圖象을 비교하는 것이고, 언문의제자와 합자에 활용된 용음합자는 篆字와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5).

(2)의 ③에서는 또 "언문은 실로 의거할 데도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옛 한자는 의거하는 데가 있지만 언문 자모는 의거할 데가 없다고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상형이나지사에 의해 만들어진 '文[독체자]'은 자형과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지만 언문 자모의 형태와 말소리 사이에는 그러한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자는 그 자형의 의미가 의거하는 사물이나 관념이 있으나 언문 자형의 말소리는 의거하는 사물이나 관념이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상형이나 지사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의 형태가 나타내는 의미는 그 그림의 형태로 그려진 사물이나 관념에 의거하지만, 말소리의 시각적 형태인 자형과 말소리의 관계는 자의적인이어서 실로 의거할 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자론적 시각에서 언문의 용음합자를 보면 언문은 근거도 없는 글자라고 할수 있다.

언문 자모는 사물의 모양을 실선[一, /, | 등]으로 본뜨고 자소를 정방형[□]으로 합자하면 그 자형은 篆字와 유사하다. 그러나 자모는 사물을 그렸다고 하나 그려진 사물이 그 글자의 의미와 대응되지 않고 말소리를 인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제대로 된 문자로 보기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ᄉ'이 '이'의 모양을 본떴지만 '그려진 이'가 'ᄉ'의 의미는아니다. '이'와 관련되는 조음 위치에서 나는 말소리, 그 중에서도 세종이 임의로 정한 [s]를 나타내기 때문이다6). '日, 月, 魚, 犬, 戈'에서 갖는 자형과 의미가 갖는 관계가 'ᄉ'에서는 '그려진 이'의 모양인 'ᄉ'과 말소리 [s]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사물을 그렸으면서도 [s]로서, 역시 다른 말소리를 나타내는 'ㅏ[a]', 'ㄴ[n]'와 결합하여 '산[san=山]으로 용음합자되는 것이다7).

⁴⁾ 중국 고문자 연구 방법론(尹澐, 2004), 윤창준 역, 學古房, pp. 33-43 참조.

⁵⁾ 이러한 쟁점은 현대의 문자론적 접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훈민정음>>에서 설명한 상형 이 육서의 상형과 유사하다고 하면(안병희 1991, 홍윤표 2005 등) 육서와의 관련성이나 유사성을 강조하는 관점이고 <<훈민정음>>의 상형은 중국 문자학과 다른 독창적인 방법이라고 하면(김주필 2005) 그것은 상소문의 주장과 같은 관점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6) &#}x27;ㅅ'을 이의 모양을 본떴다 할지라도 그에 해당하는 말소리는 [t] [th], [t], [ʃ], [s'], [ts], [tʃ], [l], [r] ··· 가운데 어느 것을 할당해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세종과 달리 [t] []를 할 당한다 해도 문자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⁷⁾ 아음에 속하는 'ㄱ, ㅋ, ㅇ'과 [k, kh, n]의 대응 관계나 '·, ㅡ, ㅣ'와 [ʌ, ɨ, i]의 대응 관계는 모두 세종 개인이 임의로 할당한 것이다. 물론 세종은 자모와 말소리 사이에 맺어지는 자의성을 줄이고 어떻게든 有緣性을 부여하고자 초성은 발음 기관의 모양, 중성은 혀의 움직임이나 입술의 모양을 자형에 반영하는 원칙을 세우고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모와 말소리 사이의 자의적인 대응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자모들을 모아 음절 단위

이러한 관점에서 언문의 용음합자는 옛것과 모두 반대되어 실로 의거할 데가 없다고 하여 표음문자인 언문의 문자론적 정통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세종의 제자 방법은 독창적이고 새로운 이론에 근거한 문자의 창제였지만 당시의 문자론적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글자를 만들어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소문을 읽은 세종에게 한 답변에서 드러나듯이 형상은 비록 문자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문자라고 할수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언문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사실이 중국에 알려진다면, 현재 동문 동궤의 수준에 있다고 자부하던 정통 유학자들에게 중국의 정통 문자학자들이 동문동궤는커녕, 언문은 문자 축에도 들지 못한다는 비아냥을 받아 부끄럽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3) ① 例부터 九州의 안에 풍토는 비록 다르나 지방의 말에 따라 따로 문자를 만든 것이 없고, 오직 蒙古·西夏·女眞·日本과 西蕃의 부류가 각기 그 글자가 있지만, ②이는 모두 夷狄의일이므로 족히 말할 것이 없다. ③ 옛글에 '華夏를 써서 夷狄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들었으나화하가 이적으로 변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④ 역대로 중국에서 모두 우리 나라는 箕子의 遺風이 있다 하고 문물예약을 중화에 견주어 말하기도 하는데, ⑤이제 따로 언문을 만들어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과 같아지려는 것은 이른바 蘇合香을 버리고 蟾螂丸을 취함이니, 어찌 문명의 큰 흠절이 아니겠는가?8) <제2항>

(3)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①에서는 당시의 일반 상황을 제시하였다. ①을 바탕으로 ②에서는 당시의 지배적인 판단 기준이면서 필자들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③에서 권위자, 즉 <<孟子>의 <등문왕편>(上)에 실린 말을 끌어와 ①과 ②에서 적용한 판단의 이념적 기준으로 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④에서는 조선이 화하의 부류에 속함을 상기시키고, ⑤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즉 언문을 만들어 쓰려는 것은 이적과 같은 부류가 되려는 것으로서, 그것은 문명의 큰 손실이 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촉구하였다.

⑤에서 이적과 같아지려고 하는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는 ①과 ②로서, 한자와 별도로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언문을 만들어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를 이적의 행위로 본 것이다. 역으로 언문을 만들어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문자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중국과 같은 부류에서 하는 행위이다. 기존의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조선에서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문만 사용한다거나 이두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말이 없으므로 결국 필자들의관점에서 (3)의 쟁점은 언문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이적과 같아지려고 하는 행위로 보고한문과 이두를 이전과 같이 그대로 사용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들은 자신들의주장을 합리화는 과정에서 스스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서 '이두를 쓰는 것'이 중국과 같은 행위냐 이적과 같은 행위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두는 당시에 한문과 함께 사용되고 있던 문자이고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적

로 만들 때에도 모두 말소리를 중심으로 합자하여 의미를 중심으로 합자하는 상형문자의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합자한 음절 단위의 글자도 의미 단위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김주 필 2005).

⁸⁾ 一. 自古九州之內 風土雖異 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 唯蒙古西夏女眞日本西蕃之類 各有其字. 是皆夷 狄事耳 無足道者. 傳曰 用夏變夷 未聞變於夷者也. 歷代中國皆以我國有箕子遺風 文物禮樂 比擬中華. 今別作諺文 捨中國而自同於夷狄 是所謂棄蘇合之香 而取螗螂之丸也 豈非文明之大累哉?

기 때문에 필자들은 한자와 함께 이두도 언문과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①과 ②에서 일본이 假名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이적의 행위인 것처럼 이두도 똑같이 '이적'의 행위가 된다. 이두도 조선의 한자음과 뜻을 바탕으로 조선어 문장에서 사용하므로 일본이 假名을 만들어 사용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3)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4)에서는 이두를 사용하는 것이 언문을 사용하는 것보다 좋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세종을 설득하고자 한다.

(4) 신라 薛聰의 吏讀는 비록 야비한 俚言이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어서 語 助에 사용하였기에, 문자가 원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胥吏나 僕隸의 무리에 이르기까지라도 반드시 익히려 하면 먼저 몇 가지 글을 읽어서 대강 문자를 알게 된 연후라야 이두를 쓰게 되는데, 이두를 쓰는 자는 모름지기 문자에 의거하여야 능히 의사를 통하게 되는 때문에, 이두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되는 자가 자못 많으니, 또한 학문을 흥기 시키는 데에 한 도움이 되었다. 만약 우리 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 못하여 結繩 하는 세대라면 우선 언문을 빌어서 한때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것은 오히려 가할 것이다. 그래도 바른 의논을 고집하는 자는 반드시, '언문을 시행하여 임시 방편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 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통용하는 문자를 습득하여 길고 오랜 계책을 삼는 것만 같지 못 하다.'고 말할 것이다. 하물며 이두는 시행한 지 수천 년이나 되어 簿書나 期會 등의 일에 防礙됨이 없는데, 어찌 예로부터 시행하던 폐단 없는 글을 고쳐서 따로 야비하고 상스러운 무익한 글자를 창조하는가? 만약에 언문을 시행하오면 관리된 자가 오로지 언문만 습득하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吏員이 둘로 나뉘어질 것이다. 진실로 관리 된 자가 언문을 배워 통달한다면, 後進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 족히 세상 에 立身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무엇 때문에 苦心勞思하여 性理의 학문을 궁리하려 하겠는 가? 이렇게 되면 수십 년 후에는 문자를 아는 자가 반드시 적어져서, 비록 언문으로써 능히 吏事를 집행한다 할지라도, 성현의 문자를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담을 대하는 것처럼 사리의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니, 언문에만 능숙한들 장차 무엇에 쓸 것인가? 우리 나라 에서 오래 쌓아 내려온 右文의 교화가 점차로 땅을 쓸어버린 듯이 없어질까 두렵다. 전에는 이두가 비록 문자 밖의 것이 아닐지라도 유식한 사람은 오히려 야비하게 여겨 東文으로써 바꾸려고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언문은 문자와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오로지 시골의 상말을 쓴 것이 아닌가? 가령 언문이 前朝부터 있었다 하여도 오늘의 문명한 정치에 變魯至道하려 는 뜻으로서 오히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고쳐 새롭게 하자고 의논하는 자 가 있을 것으로서 이는 환하게 알 수 있는 이치이다.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우환인데, 이번의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技藝에 지나지 못한 것 으로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으므로, 아무리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그 옳은 것을 볼 수 없다9). <제3항>

⁹⁾ 一,新羅薛聰吏讀,雖爲鄙俚,然皆借中國通行之字,施於語助,與文字元不相離,故雖至胥吏僕隷之徒, 必欲習之.先讀數書,粗知文字,然後乃用吏讀。用吏讀者,須憑文字,乃能達意,故因吏讀而知文字者頗 多,亦與學之一助也.若我國,元不知文字,如結繩之世,則姑借諺文,以資一時之用猶可,而執正議者必 曰 "與其行諺文以姑息,不若寧遲緩而習中國通行之文字,以爲久長之計也."而況吏讀行之數千年,而簿 書期會等事,無有防礎者,何用改舊行無弊之文,別創鄙諺無益之字乎?若行諺文,則爲吏者專習諺文, 不顧學問文字,吏員岐而爲二.苟爲吏者以諺文而宦達,則後進皆見其如此也,以爲:"二十七字諺文,足 以立身於世,何須苦心勞思,窮性理之學哉?"如此則數十年之後,知文字者必少.雖能以諺文而施於吏 事,不知聖賢之文字,則不學墻面,昧於事理之是非,徒工於諺文,將何用哉?我國家積累右文之化,恐漸 至掃地矣。前此吏讀,雖不外於文字,有識者尚且鄙之,思欲以吏文易之,而況諺文與文字,暫不干涉,專

(4)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에 이어서 이두 사용과 언문 사용을 대비하여 언문을 사용하지 말고 이두를 사용하라고 직접 말하였다. 먼저 이두와 언문을 대비하면서 이두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吏讀나 언문이나 모두 야비한 俚言이지만, 이두는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하여 語助에 사용하므로 문자와 뗼레야 뗼 수 없는 관계에 있어서 이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자나 한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두는 한자나 한문을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되고 학문을 흥기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結繩의 세대라면 우선 언문을 배워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 하더라도 문자를 도입하여 성리의 학문을 궁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언문은 문자가 없는 세대에 언문을 임시방편으로 배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지적은 언문의 장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자도 모르는 초학자나 여성들이라면 언문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가 없는 결승의 세대라하더라도 언문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성리의 학문을 궁구하기 위해서는 한문으로 된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 내용을 두고 보면 필자들에게 문자란 일상의 의사소통의 도구라기보다는 학문 연구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성인지도를 실천하고 왕도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중시했던 당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유교경전을 읽고 성리의 학문을 궁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인지도를 목표로 하여 이루어지는 학문과 치도는 중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중국어를 바탕으로 한 한자와 한문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자나 한문은 중국어를 바탕으로 하여 첨가어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한자 한문을 우리말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기 시작하여 만들어진 이두는 흥학과 치도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보았다.

당시의 유자들은 문자의 기능을 학문 탐구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중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문서 작성 도구로서의 기능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簿書나 期會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오랫동안 이두를 사용해 왔지만 별 문제가 없었으므로이두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두는 수천 년이나 사용해 왔으며 그동안 簿書나 期會 등을 작성해 오는 데에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그러한 이두를 버리고 언문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문서를 언문으로 쓰게 된다면 관리들은 언문만 습득하고 어려운 한자나 한문을 공부하지 않게 되어 吏員이 한동안 이두를 아는 부류와 언문만 아는 부류로 나뉘다가 언문을 배워 통달한다면, 언문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언문만 할 것이고 어려운 性理의 학문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시간이흐르면 문자를 아는 자가 적어져서, 문서를 작성하고 공무를 집행한다 해도, 한자, 한문을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두가 문자와 같이 사용되지만 야비하다고 하여 東文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언문은 문자 와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시골의 상말을 쓰는 것이다. 언문을 이전부터 써왔다고 해도 이두

用委巷俚語者乎?借使諺文自前朝有之,以今日文明之治,變魯至道之意,尚肯因循而襲之乎?必有更張之議者,此灼然可知之理也。厭舊喜新,古今通患,今此諺文不過新奇一藝耳,於學有損,於治無益,反覆壽之,未見其可也.

로 바꾸자고 할 터인데 지금 이두를 언문으로 바꾸어 쓰면 반드시 후세에 다시 이두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누군가 이두 대신에 언문을 쓴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나온 반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 제3항의 쟁점도 결국 이두를 언문으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에 반하여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라고할 수 있다.

(5) 만일에 말하기를, '潛殺 獄辭 같은 것을 이두나 문자로 쓴다면, 文理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자의 착오로 혹 원통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아도 獄訟 사이에 冤枉한 것이심히 많다. 우리 나라로 말하더라도 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서 이두를 해득하는 자가 직접招辭를 읽고서 허위인 줄 알면서도 매를 견디지 못하여 그릇 항복하는 자가 자못 많으니,이는 초사의 글 뜻을 알지 못하여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언문을 쓴다 할지라도 무엇이 이와 다르겠는가. 이것은 刑獄의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이 獄吏의어떠하냐에 있지 말과 문자의 같고 같지 않음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언문으로써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을 신 등은 그 옳은 줄을 알 수 없다10). 〈제4항〉

제4항에서는 潑殺 獄辭를 한문이나 이두로 작성하는 것을 언문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쟁점으로 하여 그러한 시도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한문이나 이두로 써 오던 형살, 옥사를 이제 언문으로 써서 읽어 주면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愚民이라도 그 내용을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이두 대신에 언문으로 쓰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상소문의 필자들은 형살 옥사로 인해 생기는 억울함은 문서에 쓰는 문자가 아니라 옥리의 마음 가짐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두 예를 들었다. 즉 말과 글이 같은 중국의 사례와 이두를 招辭를 읽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서도 옥리의 매를 견디지 못하여 항복하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필자들의 이러한 주장에는 역시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우민이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세종이 문제로 본 것은 문서의 내용을 몰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한두 글자의 차이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이다. 그런데 옥리의 자질에 관련되는 경우를 예로 하여 옥리의 마음 가짐을 문제로 들고 나와 형살 옥사의 문제 가운데 문자로 인해 생기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굳이 이두로 작성하던 문서를 언문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

세종도 옥리의 자질로 인해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이니었다. 다음 기사는 이 문제에 대해 세종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6) 獄事란 것은 사람의 死生이 매인 것이니 진실로 참된 정상을 얻지 못하고 매질로 자복을 받아서, 죄가 있는 자를 다행히 면하게 하고, 죄가 없는 자를 허물에 빠지게 하면, 형

¹⁰⁾ 一. 若曰如刑殺獄辭 以吏讀文字書之 則不知文理之愚民 一字之差 容或致冤 今以諺文直書其言 讀使 聽之 則雖至愚之人 悉皆易曉而無抱屈者 然自古中國言與文同 獄訟之間 冤枉甚多. 借以我國言之 獄囚 之解吏讀者 親讀招辭 知其誣而不勝棰楚 多有枉服者 是非不知招辭之文意而被冤也明矣. 若然則雖用諺文 何異於此? 是知刑獄之平不平 在於獄吏之如何 而不在於言與文之同不同也. 欲以諺文而平獄辭 臣等未見其可也.

벌이 적당하지 못하여 원망을 머금고 억울함을 가지게 하여, 마침내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되면 족히 천지의 화기를 상하게 하고, 水災와 旱災를 부르게 되니, 이는 古수의 通惠이었다. 나는 이것을 퍽 염려하여 과거에 있은 刑獄의 변을 살펴보고 우선 더욱 두드러졌던 일들을 들겠노라. […중략…] 슬프도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벌로 수족이 끊어진 자는 다시 이을 수 없으니, 진실로 한번 실수하면 후회한들 미칠 수 있으랴. 이것이 내가 밤낮으로 불쌍히 여기어 잠시라도 마음 속에 잊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나의 법을 맡은 내외 관리들은, 옛 일을 거울로 삼아 지금 일을 경계하여 정밀하고 명백하며 마음을 공평하게 하여, 자기의 의견에 구애됨이 없고, 先入된 말에 위주함이 없으며, 附和雷同으로따르는 것을 본받지 말고, 구차하게 因循하지 말며, 죄수가 쉽게 자복하는 것을 기뻐하지말고, 獄辭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요하지 말며, 여러 방면으로 힐문하고 되풀이해 찾아서, 죽는 자로 하여금 九泉에서 원한을 품지 않게 하고, 산 자로 하여금 마음 속에 한탄을 품음이 없게 하며, 모든 사람의 심정이 서로 기뻐하여 囹圄에 죄수가 없게 하고, 화한 기운이 널리펴져서 비오고 볕나는 것이 시기에 순조롭게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 <1431년(세종13) 6월 2일자 실록 기사>

(6)에서 […중략…] 앞 부분의 내용과 같이 옥사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의 晉, 唐, 宋, 元 등의 시대에 옥리의 잘못이나 술책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 보이고,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예들도 들고 "내가 내외의 옥사를 판결하는 관리들을 보건대, 최초에 추국하여 文案이 겨우 이룩되면, 뒤에 覆案하는 자의 거개가 거기에 따라서 글로 그 사연을 만들고, 참고해 증험하고 자세히 연구하여 그 실정을 찾는 이가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옥리가 옥사를 잘못 처리하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세종은 옥리들이 옥사를 처리할 때에 신중하게 하도록 형조에하고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옥리의 자질에 관련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옥리의 자질 문제는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보다 상위에 있는 옥리의 선발과 교육에 관한 문제로서문서 내용을 이해도 하지 못하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와 차원이 다르다. 그러므로 옥리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우민이 문서의 내용을 몰라 생기는 문제점은 모두 옥리가 해 줄 수는 없다. 말하자면 옥리의 자질로 인해 생기는 형살 옥사의 문제는 우민이 이두로 된 옥사 관련 내용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제대로설명하지 못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와 다르므로 이두로 작성하던 것을 언문으로 대체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하여 논리에 맞지도 않는 이 제5항을 읽고 나서 세종도 단단히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

(7) 1. 무릇 事功을 세움에는 가깝고 빠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국가가 근래에 조치하는 것이 모두 빨리 이루는 것을 힘쓰니, 두렵건대, 정치하는 체제가 아닌가 한다. 만일에 언문은 할 수 없어서 만드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풍속을 변하여 바꾸는 큰일이므로, 마땅히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百僚에 이르기까지 함께 의논하되, 나라 사람이 모두 옳다 하여도 오히려 先甲後庚하여 다시 세 번을 더 생각하고, 帝王에 질정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중국에 상고하여 부끄러움이 없으며, 百世라도 聖人을 기다려 의혹됨이 없은 연후라야 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吏輩 10여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韻書를 고치고 근거

없는 諺文을 附會하여 工匠 수십 인을 모아 刻本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니, 천하후세의 公議에 어떠하겠는가. 또한 이번 청주 초수리에 거동하시는 데도 특히 연사가 흉년 인 것을 염려하여 호종하는 모든 일을 힘써 간략하게 하였으므로, 전일에 비교하면 10에 8, 9는 줄어들었고, 계달하는 公務에 이르러도 또한 議政府에 맡기어, 언문 같은 것은 국가의급하고 부득이하게 기한에 미쳐야 할 일도 아닌데, 어찌 이것만은 行在에서 급급하게 하여 聖躬을 조섭하는 때에 번거롭게 하는가? 신 등은 더욱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다11). <제5항>

제5항에서는 부득이하게 언문을 만들어 써야 한다면 그것은 풍속을 바꾸는 큰일이므로 여론을 거쳐 여러 모로 따져보고 신중하게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조급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여러 사람의 의논을 들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吏輩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韻書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附會하여 장인 수십 인을 모아 책을 만들어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고 있음을 알고, 이렇게 일을 급하게 시행하다가 후세에 누를 끼치면 어떡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정치에 신경을 써야 할 이 때 임금은 의정부에 공무를 맡기고 언문 같은 국가의 급하고 기한에 미쳐야 할 것도 아닌 일을 行在에서 급급하게 하여 聖躬을 조섭하여 번거롭게 하고 있으니, 임금은 정치에 신경을 쓰고 직접 공무를 보고, 행재에 언문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 가서 몸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하였다.

이두를 대체하여 언문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실로 풍속을 바꾸는 큰일이 될 것이다. 특히 관리들이 이두로 작성하던 각종 문서를 언문으로 작성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두는 표기법의 일종으로서 관부나 민간에서 어떤 행사나 사건의 경위를 기록하거나 증명하는 데에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건의 경위서나 증빙서류는 대체로 일정한 양식을 갖추게 되고 거기에 사용되는 語辭나 문자도 대개 공통성을 띄게 된다(서종학 1995; 12). 이와 같이 이두는 형식적인 면에서만 하더라도 오랜 관습이 누적되어 있어서 이것을 언문으로 쓴다고 한다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임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두 대신에 언문을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중대한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언문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언문의 시행은 곧 국가의 풍속을 바꾸는 사업이 되어 여러모로 따져보고 가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본 다음,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급하게 서둘러 시행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 조항에서는 언문 사용과 관련하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그 것은 먼저 여론을 돌아보지도 않고 갑자기 吏輩 10餘 人에게 언문을 가르쳐 익히게 하고 또 韻書를 고쳐 언문을 붙여 장인 수십 인을 모아 책을 만들어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사태를 보고 후세에 누가 되면 가만히 있겠느냐 하고 임금에게 반문하였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특히 "벌써 吏輩 10여 人에게 언문을 가르쳐 익히게 한다는 사실과, 韻書를 고쳐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언문으로 억지로 끌어 부쳐 장인 수십 인을 모아 刻本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고 있다."는 내용을 중시하여 이 내

¹¹⁾ 一. 凡立事功 不貴近速 國家比來措置 皆務速成 恐非為治之體. 儻曰諺文不得已而為之 此變易風俗之大者 當謀及宰相 下至百僚國人 皆曰可 猶先甲先庚 更加三思 質諸帝王而不悖 考諸中國而無愧 百世以俟聖人而不惑 然後乃可行也. 今不博採群議 驟令吏輩十餘人訓習 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工匠數十人刻之 劇欲廣布 其於天下後世公議何如? 且今淸州椒水之幸 特慮年歉 扈從諸事 務從簡約 比之前日 十減八九 至於啓達公務 亦委政府. 若夫諺文 非國家緩急不得已及期之事 何獨於行在而汲汲爲之 以煩聖躬調燮之時乎? 臣等尤未見其可也.

용이 <<동국정운>>과 같은 인위적인 한자음 개신 사업을 하려고 하여 이것을 반대하여 상소문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왔다.

이숭녕(1958, 1976)에서는 이 구절을 바탕으로 이 상소문이 한자음 개신을 반대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먼저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배경으로 이 상소문을 올리기 4일 전에 세종은 신하와 대군을 불러 모아 모임을 가졌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인물의 면면을 보면, 최항, 박팽년, 신숙주, 이선로, 이개 등 다섯 학사와 강희안은 <<훈민정음>>, <<동국정운>>의 편찬 사업과 <<용비어천가>>의 보수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세자와 두 대군에게 이사업을 감장하게 하고 큰 상을 주고 물자를 넉넉하게 지원하라고 하였으니 세종이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는 사업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틀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상소문을 하게 된 동기가 그것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한자음 개신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업이라면 그 사업의 부당함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야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이 상소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논의하 기로 하고 본 연구에서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언문을 시행하는 것이 풍속을 변화시 키는 큰일이라고 한 앞부분의 내용이다. 부득이하여 언문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널리 여론을 들어보고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는지 따져보고 신중하게 일을 진행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상황을 두러 보면 이미 언문을 시행하고자 서둘러 움직이고 임금은 몸이 좋지 않아 온천에 가면서 공무도 처리하지 않고 맡기면서 언문 관련 일은 행재에까지 가지고 가서 하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 조항의 운서 개정과 관련된 사업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소문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흐름이 있고 그 중에서 제3항과 제4항에서 이두로 사용하던 것을 언문으로 대치하지 말라고 한앞 조항의 내용을 생각하면, 그리고 제5항의 앞 부분에서 언문을 시행하는 것이 풍속을 바꾸는 큰일이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언문의 시행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한자음 교정 작업은 그 중 하나의 작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8) 先儒가 '여러 가지 玩好는 대개 志氣를 빼앗는다.' 하였고, '書札에 이르러서는 선비의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것이나, 외곬으로 그것만 좋아하면 또한 자연히 지기가 상실된다.' 하였다. 이제 東宮이 비록 덕성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聖學에 潛心하여 더욱 그 이르지 못한 것을 궁구해야 할 것이다. 언문이 비록 유익하다 이를지라도 특히 文士의 六藝의한 가지일 뿐이다. 하물며 만에 하나도 정치하는 도리에 유익됨이 없는데, 정신을 연마하고 사려를 허비하며 날을 마치고 때를 옮기니, 실로 時敏의 학업에 손실이 된다. 신 등이 모두文墨의 보잘것없는 재주로 侍從에 待罪하고 있으므로,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면 감히 含默할 수 없어서 삼가 肺腑를 다하여 우러러 성총을 번독한다12). <제6항>

(8)은 제7항으로서, 동궁까지 언문 관련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동궁이 경학에 몰두하지 못함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백 가지 玩好는 대개 志氣를 빼앗고 書札에 이르러서는 선비[儒 者]의 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것이나 외곬으로 그것만 좋아하면 또한 자연히 志氣가 상실된

¹²⁾ 一. 先儒云"凡百玩好 皆奪志 至於書札 於儒者事最近 然一向好着 亦自喪志."今東宮雖德性成就 猶 當潛心聖學 益求其未至也. 諺文縱曰有益 特文士六藝之一耳 況萬萬無一利於治道 而乃研精費思 竟日 移時 實有損於時敏之學也. 臣等俱以文墨末技 待罪侍從 心有所懷 不敢含默 謹罄肺腑 仰瀆聖聰.

다고 한 주자의 〈<근사록〉〉(권11)에 있는 程明道¹³⁾의 말을 끌어 와 東宮이 聖學에 潛心하여 더욱 궁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언문은 文士가 갖추어야 할 六藝의 하나일 뿐이며, 治道에 유익함이 없는 언문에 시간을 허비하게 하여 時敏의 학업에 손실이 된다고 하였다.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위정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꼽았기 때문이다. 이글의 주된 내용은 성인지도에 대하여 학습해야 할 시기에 언문 사용과 관련된 일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세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반을 쌓아나가지 못함을 걱정한 것이다.

Ⅲ. 上疏文의 意味

1443년 12월 30일자로 실린 다음 실록 기사를 통하여 이 상소문을 올리던 시점에는 새문자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9) 이 달에 임금이 친히 諺文 28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篆字를 모방하고, 初聲·中聲·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文字에 관한 것과 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簡要하지만 轉換이 무궁하다. 이것을 '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

이 기사에서는 언문 28자를 설명하고 나서 그것으로 '文字에 관한 것'과 '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다고 하였다. '文字'라면 한자를 말하므로 한자의 음을 적을 수 있다는 말이고 '俚語'라면 이두로 쓴 우리말 문장을 말하므로 이두 중의 실사 부분의 한자어는 한자음을 적고 고유어나 허사는 언문으로 적을 수 있음을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9)의 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상소문의 서두에는 상소문의 필자들이 이미 창제된 언문을 보고 "諺文을 制作한 것이 지극히 신묘하여 만물을 창조하고 지혜를 운전함이 천고에 뛰어나지만…"라고 하여 새 문자를 잘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 이 상소문에서 펼치는 전체 내용이 창제된 언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상소문이 언문 창제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¹⁵⁾, 그렇다면 이 상소문은 과연 무엇을 반대하여 올렸을까 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이숭녕(1958, 1976)에서는 먼저 실록을 검토하여 1444년 2월 16일자 기사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운회>>의 번역 사업에 주목하였다.

(10) 집현전 교리 崔恒, 부교리 朴彭年, 부수찬 申叔舟, 李善老, 李塢, 돈녕부 주부 姜希顔

¹³⁾ 程頤(1033년~1107년), 중국 송나라 도학의 대표적인 학자. 伊川先生으로 호칭되었다.

¹⁴⁾ 이 기사 외에 <<훈민정음>>(1446)의 <정인지 서문>에도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옵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지으셨다."고 하여 1443 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음을 밝혀 놓았다.

¹⁵⁾ 그런데도 일제시대에 한글을 연구하던 일부 학자들은 이 상소문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 이유는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 상소문을 '훈민정음 창제 반대 상소문'이라든지 '한글 창제 반대 상소문'이라 칭한다는 것이다.

등에게 명하여 議事廳에 나아가 諺文으로 《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東宮과 晉陽大君 李瑈, 安平大君 李瑢에게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모두가 성품이 睿斷하므로 賞을 거듭 내려 주고 供億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였다¹⁶). <실록 1444년 2월 16일자>

(10)의 <<운회>>는 원나라의 웅충이 만든 <<고금운회거요>>로서, 당시에 제도나 풍속, 도구 등에 등장하는 한자의 뜻풀이나 음[反切]을 설명하는 전거로서 자주 활용되던 문헌이었다. 이숭녕(1976)에서는 언문으로 한자의 음을 능히 표기할 수 있다는 (9)에서 설명한 '문자에 관한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다는 설명의 연장선에서 세종이 당시혼란된 조선의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주음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0)과 같이 <<운회>>를 번역하고자 한 것은 '혼란된 조선의 한자음을 이 운서 체계에 따라 새 한자음을 만들어 언문으로 표기하자고 한' 것으로 해석하고, 의사청에서 가진 <<운회>> 관련 모임은 이 <<고금운회거요>>의 체계에 따라 새 한자음을 만들어 국민에게 사용을 권장하기위해 <<운회>>의 번역본을 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런데 이숭녕(1976)에서는 현실 한자음을 새 한자음으로 바꾸자는 세종의 생각은 후에 <<동국정운>>의 편찬과 관련되는 가히 '언어 혁명'이라고 할 만한 회의였다고 하였다. 이회의를 가진 시기에는 이 상소문의 제3항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미 하급 관리(아전) 또는 직공들을 뽑아 언문을 강습하고, 이미 새 한자음의 표기를 위해서 刻字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언어 혁명'과 같은 한자음 개정 작업 상황을 알게 된 최만리 등은 이 소식에 크게 놀라서, 하루 아침에 수만의 한자음을 새로 엮은 자음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 헛수고이며, 일대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단연 반대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숭녕(1958, 1976)에서 추정한 이러한 주장에는 〈<동국정운〉〉 한자음의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국정운〉〉은 조선 한자음에 중국의 운서음을 가미한 것으로서 세종이 조선한자음이 중국의 원음과 크게 다른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편찬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자는 중국에서 온 것이니 한자의 발음도 중국의 원음에 가능한 한 가깝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인위적인 개혁을 한 것으로 보았다. 조선한자음은 중국에서 유입되어 우리나라 한자음으로 이미 정착되었으므로, 이 관습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세종은 이것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개혁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상소문에서 한자음에 관한 언급은 제5항의 다음 밑줄 친 부분에만 나타나며 이 부분도 모 두 한자음 개신에 관한 설명이냐 하는 문제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11) 일을 할 때 그 성과가 빠름을 기할 것은 아니다. 만일 언문을 부득이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지었다고 하면, 재상들과 의논하고 일반 관리와도 의논하며, 국민도 옳다고 하여도 신중히 생각하고 할 일인데, 이제 널리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 않고 급히 하급 벼슬 아치들 10여 인에게 언문을 배우게 하고, 또 옛 사람이 만든 운서를 가볍게 고치어 근거없는 언문에 맞추어 직공 수십 명을 시켜 글자를 새겨 천하에 널리 깔고자 하니, 뒷세상의 여론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청주 초수에 가시는데 비용을 대폭 절약하시고 가시면서도, 또 거기까지 가지고 가시어 몸 차료하시는 데에 번거롭게 하시려는가(이숭녕 1976, 밑줄

¹⁶⁾ 命集賢殿校理崔恒 副校理朴彭年 副修撰申叔舟 李善老 李塏 敦寧府注簿姜希顏 等 詣議事廳 以諺文 譯韻會 東宮與晉陽大君王柔安平大君瑢 監掌其事 皆稟睿斷 賞賜稠重 供億優厚矣

필자)

이숭녕(1976)에서는 이 상소문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은 당시의 유신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으로 보았다. 즉 전체 내용은 "당시는 중국 또는 중국 문화의 숭상이 최고조로 발달된 때이어서 한자 외의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몽고, 일본 같은 오랑캐나 할 짓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두를 사용하면 한자를 알게 되지만 언문 사용으로 만족한다면 학문이나 치도가 크게 해를 입을 것이고, 재판의 판결문이 언문으로 쓰이면 피고가 그 언문으로 판결문을 알게 되어 원한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판결의 공평은 죄를 집행하는 관리의질에 달린 것이지 글과 말에 달린 것은 아니다…" 등으로서 사대모화를 최고의 미덕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중국 문화와 제도, 문자, 학문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극단적인 사대모화 사상을 노출하고 있으나 오늘날과 달리 당시로서는 솔직한 유신들의 사상적 표현이었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 상소문에서는 '언문을 사용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주장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언문 사용이 여러 각도에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지 '없애라'라든지 '사용하지말라'라든지 하는 확고한 주장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상소문을 작성하게 된 동기라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의 5, 6항에 제시되었다."고 하여 특히 5항의 밑줄 친 부분이 <<고 금운회거요>>를 가지고 한자음을 고치려 한 것으로서 이 내용이 상소문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더욱 뒷받침하는 내용으로서 이 상소문을 읽고 보인 세종의 태도 가운데 다음 내용은 우리의 한자음을 개신하려는 굳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하였다.

(12) 또 너희가 운서를 정말로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사성칠음의 자모는 모두 얼마나 되느냐. 이제 내가 만일 이 운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장차 이것을 바로잡을 것인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숭녕(1976; 675~676)에서는 제5항을 이 상소문의 핵심 내용으로 파악하고 이 상소문을 쓴 집현전 학사들이 '서리들을 모아 한글의 강습을 시켜놓고, 새한자의 발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묘한 언문자를 꾸미고, 그것에 따라서 이상한 언문 활자를 조각하게 한 것, 그것이 운서를 고친다는 것이고 <〈운회언해〉〉란 이름으로 출판을 하게 한다'고 듣고 나서 최만리 등 집현전 학사들이 이러한 사업의 결과 커다란 혼란이 올 것이라고 보아서 상소문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 상소문을 본 세종이 이들을 불러, (12)와 같이 말한 것은 곧 현실 한자음의 일대 개혁을 완수하고 만다는 세종의 강철 같은 결심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하였다. 결국 이 한자음의 개신은 <〈東國正韻〉〉으로 최종안이 결정되고 그것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려고 하였으나 이 세종의 정책은 실패하고 만 것으로서, 이 한자음 개신 사업에 대한 최만리들의 반대 방법은 졸렬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현실 한자음 개신에 대한 반대는 정당한 주장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이숭녕(1976)의 주장이 발표된 이후 국어학계에서는 이 상소문의 내용이 한자음 개신을 반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의 국어학사적 연구인 최병선 (2009), 민현식(2011), 국사학계의 정다함(2009)17), 이원명(2011) 등에 이르는 대부분의

¹⁷⁾ 정다함(2009)에서는 훈민정음이 표음문자라는 사실과 당시 명의 정세, 그리고 명과 조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훈민정음이 서문에서 세종이 제시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의 표준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연구에서 한자음 개혁이 이 상소문을 올린 이유나 동기로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현식 (2011)에서는 이 상소문이 "단순히 한글 창제를 반대한 문서가 아니라 한자음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 이념적 관점에서 어문정책을 추구한 한국 최초의 이념적 어문정책 문서로 그 내용은 세종의 실용 및 애민 정신과 원로의 우국충정이 갈등 구조를 보인 것"으로 이해하였다18).

그런데 본고 검토한 제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한자음 개신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상소문의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각 조항마다 쟁점이 있어서 그것을 무시하고 한자음 개신을 반대하는 내용을 반대하여 이 상소문을 올렸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한자음 개신에 관한 내용은 제5항의 일부로서 제5장에서도 한자음 개신 문제보다는 언문을 시행하는 것이 풍속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한 내용이 더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2장에서 검토한 이 상소문의 중심 내용을 각 조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각 조항의 핵심 내용>

조항	쟁점
1	언문의 용음합자는 다 옛것과 반대되고 실로 의거할 데가 없는 무계한 글자이다.
	이러한 사실이 중국에 알려져 비난받으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2	언문을 시행하는 것은 이적의 부류나 할 일이어서 문명에 큰 누가 될 것이다. 그
	러므로 한문과 이두를 그대로 사용하고 언문을 시행하지 말라.
3	이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언문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유용하다. 그
	러니 이두를 그대로 사용하고 언문으로 대체하지 말라.
4	판결의 공평함 여부는 옥리의 자질에 달린 것이지 글과 말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한문 이두로 쓰던 것을 언문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5	언문을 시행하는 것은 풍속을 바꾸는 큰일이므로 시급을 다투어 하지 말고 언문
	의 시행에 신중을 기하라. 그러니 갑자기 吏輩 10餘人에게 언문을 배워 익히게
	하고, 운서를 고치어 언문에 맞추고 직공 數十人을 모아 (언문)글자를 새겨 천하
	에 널리 배포하려 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리고 시급을 다투지 않는 언문 관련 일
	을 行在에 가지고 가서 몸을 치료하는 데에 번거롭게 하지 말라.
6	성리학에 몰두해야 할 東宮이 언문에 정신을 쏟게 하지 말라.

이 상소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언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두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제1항과 제2항은 사대모화 사상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1항에서는 언문이 문자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무계한 글자로서 문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보면 부끄럽다는 것이고 제2항은 성인지도로 나아가는 데에 언문의 사용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적처럼 치도와 학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고 한문과 이

¹⁸⁾ 국사학계, 예를 들어 이원록(2011)에서도 이 상소문에서 문제로 삼는 사대모화 사상은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사상이어서 그것이 이 상소문에서 문제될 것은 아니라 보고 이 상소문에서 문제 삼은 것은 '무리하고 과격한 한자음 개신'을 반대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두로 문자 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제3항도 아무 문제 없이 수천 년 써온 이두를 언문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제4항도 한자나 이두로 써 오던 형살 옥사 문서를 굳이 언문으로 바꾼 다고 하여 우민의 억울함이 별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니 오히려 옥리의 자질 향상에 힘쓰라는 말이다. 그리고 제5항에서는 언문을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 시행하는 것은 풍속을 바꾸는 일이니 여론을 들어보고 각계의 여러 사람들과 의논을 한 다음에도 신중을 기하여 시행할 일인데 이미 이배 10여인을 불러 언문을 가르쳐 익히게 하고, 운서를 고치어 언문을 붙여 책을 펴내고자 하니 너무 서두르는 것이다. 그리고 시급을 다투지 않는 언문과 같은 일에 빠져 공무도 의정부에 맡기고 몸조리하러 가는 행재에서도 언문 관련 일을 가지고 가니 왜 그렇게 일을 서둘러 시행하려고 하는가? 심지어 동궁은 학문에 몰두해야하는데 언문 관련 일에 빠져 있으니 본연의 일로 돌아가게 하라고 권유하였다.

이러한 상소문을 읽고 세종은 상소를 한 사람들을 불러 의견을 나누었다. 거기에서 세종이 보인 발언을 보면 상소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오간 내용 가운데 실록에 기록된 세종의 발언을 상소문의 각 조항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상소문을 올린 신하들에게 한 세종의 발언>

조항	쟁점에 관한 세종의 발언
1	[세종]: 너희들이 이르기를, '音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 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薛聰의 吏讀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으냐? [최만리]: 설총의 이두는 비록 음이 다르다 하나, 음에 따르고 해석에 따라 語助와 문자가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사온데, 이제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여 함께서 그 음과 해석을 변한 것이고 글자의 형상이 아닙니다.
2	[세종]: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 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 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君上의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3	[세종]: 전번에 金汶이 아뢰기를, '언문을 제작함에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불가하다 하고…
4	[세종]: 또 鄭昌孫은 말하기를, '三綱行實을 반포한 후에 충신·효자·열녀의 무리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資質 如何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 하였으니,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 없는 庸俗한 선비이다."(먼젓번에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三綱行實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하였는데, 창손이 이 말로 계달한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교가 있은 것이었다.)
5	[세종]: 이보다 앞서 김문이 언문 제작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하니 어찌된 일인가? [세종]: 네가 韻書를 아느냐. 四聲七音에 字母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세종]: 疏에 이르기를,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技藝라.' 하였으니, 내 늘그막에 날[日]을 보내기 어려워서 서적으로 벗을 삼을 뿐인데, 어찌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여 하는 것이겠느냐. 또는 田獵으로 매사냥을 하는 예도 아닌데 너희들의 말은 너무 지나침이 있다.
[최만리]: 또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의 技藝라 하온 것은 특히 文勢에 인하여 이 말을 한 것이옵고 의미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옵니다.
[세종]: 동궁은 公事라면 비록 세미한 일일지라도 參決하시지 않을 수 없사오나, 급하지 않은 일을 무엇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며 심려하시옵니까.

세종은 먼저 제1항에서 용음합자를 가지고 문제 삼은 필자들에게 이두도 異音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두도 글자가 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문과 다르지 않으며 '馬騰[호], 육 5 [호]' 등과 같이 조선 한자음을 사용하여 우리말 음절을 표기하니 모두 옛것에 위반된 다. 그리하여 세종은 이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설총의 이두도 이음이지 않느냐? 그 러니 이것은 중국에 들어가면 그것도 조소거리가 될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한 것이다. 이에 최만리도 세종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자어나 한문구절 뒤에 놓여 어조의 기능 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자와 분리되지 않는데 지금의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여 함께 써서 그 음과 훈을 변화시킨 것으로서 글자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세종의 지적 은 받아들이면서도 상소문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제2항의 중점 논의 사항은 화하, 또는 중국으로 표현되는 성인지도에 관한 관점에 대하여 세종이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君上의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이 말은 성인지도를 실천하는 것을 중화와 이적으로 나눈 이분법에 대하여 성인지도에는 그러한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문한 것이다. 상소문의 필자들이 나는 이분법은 맹자가 진상에게 설파한 중화와 이적의 이분법이었다. 이러한 이분법으로 나누면 중화와 이적은 다음과 같은 상대적인 내용을 함의한다.

(15) <孟子의 중화와 이적의 구분>

	중화	이적
부류	중국	서번, 몽고, 일본 등
관심	성인지도, 왕도정치	농삿일
계층	위정자(천하 다스리는 일)	농부(농사 짓는 일)
-1 -11	인재, 후진 양성	베ㅁ 도키시 거기
과제	(仁(인재)>忠(善)>惠(재물),	백묘 토지의 경작
다스림	남을 다스림	다스림을 받음
수고로움	마음(정신)	몸
인물	요, 순, 우, 주공, 공자 등	신농씨
스승	진량	허행
문자1	한문	이두
문자2	이두	언문

그런데 이러한 분류에서 문자의 경우 조선에서는 한자, 이두, 언문의 세 부류가 있어서 중화와 이적의 두 부류로 나누기가 합당하지 않다. 굳이 나눈다면 위의 표와 같이 문자1처럼 나누어 안문과 이두가 각각 중화와 이적의 부류와 같은 성격의 문자로 나뉘고 다시 이두와 언문으로 나뉘어 언문과 이두를 대비하는 것이 타당한데 상소문의 필자들은 이러한 이분법을 택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을 버리고 이적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을 그만 두라고 하면 위 표와 같은 방법으로 나누면 이두가 모호하여 이적과 같은 부류이기도 하고 중화와 같은 부류이기도 하여 자신들이 말하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두는 중화적인 성격도 갖고 이적의 성격도 갖지만 필자들은 중화적인 성격만 강조하여 한자와 이두를 묶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세종은 상소문의 필자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오히려 '편민'이라는 관점에서 이두와 언문을 같은 부류라고 말하고 '편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두보다 언문이 낫지 않느냐 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제3항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이 이두와 언문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결국 쟁점은 이두를 사용하느냐 언문을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김문의 언행을 문제 삼은 것도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도되고 제5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언문 제작과 관련된 두 사람의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모르므로 현재로서는 어느 조항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정창손의 <<삼강행실도>> 관련 발언 문제는 제4항에 해당한다. 제4항도 이두로 작성하는 문서와 관련된 문제로서 3항이나 5항에 넣어도될 것을 왜 굳이 제4항으로 따로 떼서말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물론 이 내용이 세종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 이두를 언문으로 대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않은가 생각된다. 제4항 관련해서 세종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대답을 한 정창손에게 화가 났다. 궁색한 논리로써 세종의 심기를 거슬린 것이다. 제5항의 뒷부분에 있는 임금에 대한 언급과제6장의 동궁에 관한 이야기는 위정자와 관련된 맹자의 발언을 참고로 하지 않더라도 나라를 책임지고 임금이나 장차 책임질 동궁과 관련하여 신하로서 필요한 내용을 충언한 것이다. 세종도 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제5항과 관련된 내용이다.

제5장의 중요 내용도 이 상소문의 다른 조항과 언문을 사용하는 문제를 문제 삼고 이두를 그대로 사용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를 나눈 상황이 분명하지 않아 모르겠으나 김문이 처음에는 언문 제작을 가벼이 생각했으나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태도를 바꾸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를 보고 세종은 "언문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하니 어찌된 일인가?"라며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이유를 캐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제5항과 관련된 이야기는 운서나 한자음 개신에 관한 내용이다. 이숭녕(1976)에서는 '이배 10여인에게 언문을 배워 익히도록 하는 작업'도 한자음 개신과 관련된 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상소문의 전체 내용으로 보아 '언문을 가르쳐 익히도록 하는 일'은 그자체로서도 가능하고 한자음 개신과도 관련되기도 한 일일 가능성이 있다. 이두로 쓰던 문장을 언문으로 작성하려 한다면 당연히 한자음만이 아니라 우리말 문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언문으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된다.

(16) 1) 급히 하급 벼슬아치들 10여 인에게 언문을 배우게 하고,

- 2) 또 옛 사람이 만든 운서를 가볍게 고치어 근거 없는 언문에 맞추어
- 3) (언문으로 된 책을) 직공 수십 명을 시켜 글자를 새겨 천하에 널리 깔고자 하니,

말하자면 이배 10여인에게 언문을 배워 익히도록 하여 이두문이나 언해문에서 하듯이 언문을 사용하는 법을 익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동국정운>>과 같이 운서를 고쳐 언자로 한자음을 다는 기준을 마련한 후, 이두문 대신에 언문으로 된 책을 만들어 널리 펴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말하자면 한자음 개정 작업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두문을 언문으로 대체하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언문으로 된 책은 이두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이두문과 같은 성격을 갖지만 우리말의 특성을 나타내는 실사의 고유어와 기능어인 허사는 언문으로 적고 한자어나 한문 구절은 한자로 쓰되 언자로 음을 붙이는 작업을 하였고 그 한자음은 <<동국정운>> 한자음과 같은 방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정된다19).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용비어천가>> 등은 그러한 작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경으로 생각된다. 언문이 없었었더라면 이 문헌들이 이두문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당시 언문의 사용 방향은 이러한 문헌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문헌은 모두 국한문 혼용을 하고 있으며, 한자어는 한자를 쓰고 그 옆에 언자로음을 병가하고 고유어로 된 실사나 문법 기능을 하는 허사는 모두 언문으로 적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5항에서 말하는 풍속을 바꾼다는 말은 이두로 써 오던 많은 서적이나 공적인문서를 언문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방안이 시도되고 실험되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하여 제5항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너무 시급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져 여러 사람들에게 의논을 하고 여론도 들은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간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이 상소문은 전체적으로 이두문을 언문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을 문제 삼아 그러한 시도를 하지 말라고 임금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언문을 시행해야 한다면 여론을 살펴가며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시행하라고 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고 문제의 요지를 잘 지적하여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그 이후의 세종대 어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근거를 마련한 <<훈민정음>>이 간행된 것도 이 상소문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른 나라에도 새 문자를 만들어 시행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훈민정음>>만큼 체계적이고 치밀한 근거를 제공하는 해설서는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간행에 갑자 상소문이 제1항에서 말한 바 용음합자의 근거가 없고 실로 의거할 데가 없다는 말에 새종이 수긍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세종대왕의 서문이 이 상소문의 내용에서 문제 삼은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해례> 부분이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중성해>, <합자해>, <용자례>로 구성된 내용은 표음문자 그 중에서도 음소문자로 창제된 훈민정음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례>의 뒷에 제시된 <정인지 서문>의

¹⁹⁾ 그동안 <<동국정운>> 한자음은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조선의 현실한자음에 수당 시대의 운서음이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의 한자음도 아니고 중국의 운서음도 아니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河野六郎 1940 등). 그러나 <<동국정운>>의 한자음에 다소의 인위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에서 사용되는 한자음을 바탕으로 수당대의 중국 운서음을 가미했다는 것은 반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정밀하게 연구하여 조선 한자음의 요소와 중국 운서음의 특징을 구분해 내면 그것은 조선한자음과 수당 시기의 중국 한자음을 모두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주필 2012).

내용은 이 상소문에서 문제 삼은 것을 조목조목 설명해 놓아 서문 전체가 이 상소문에 대답하는 느낌을 주기까지 한다. <<동국정운>>20)을 펴내는 작업도 이 상소문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세종의 <<훈민정음>> <서문>과 '해례' 부분의 <정인지 서문>이 이 상소문에서 쟁점으로 삼은 내용과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제시한다.

(17) <<訓民正音>>의 <어제 서문>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漢字]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 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히어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할 뿐이다.

(18) <<訓民正音>>의 <정인지 서문>

상소	각 조항의 쟁점에 대한 설명
조항	
서두	⑨그 淵源의 정밀한 뜻의 奧妙한 것은 臣 등이 능히 발휘할 수 없는 바이다. 삼가생각하옵건대, 우리 殿下께서는 하늘에서 낳으신 聖人으로써 制度와 施設이 百代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正音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 행위의 私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대체로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 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도리를 깨달아 이것을 실지로 시행하여 성공시키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인져."
1	1) ①天地 自然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天地 自然의 글이 있게 되니,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萬物의 情을 통하여서, 三才의 도리를 기재하여 뒷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 그러나 사방의 風土가 구별되매 聲氣도 또한 따라 다르게 된다. 2) ⑤계해년 겨울에 우리 殿下께서 正音 28字를 처음으로 만들어 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訓民正音》이라 하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古篆을 모방하고, 소리에 인하여 音은 七調에 합하여 三極의 뜻과 二氣의 정묘함이 구비 包括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28자로써 轉換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2	②그러나 사방의 風土가 구별되매 聲氣도 또한 따라 다르게 된다. 대개 外國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그 日用에 통하게 하니, 이것이 둥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남과 같은데, 어찌

^{20) &}lt;<東國正韻>>의 한자음은 조선의 현실 한자음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원음의 요소보다 토착음의 요소를 중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東國正韻>>의 한자음은 조선 한자음을 바탕으로 하면서 중국의 수당시대 운서음을 加味한 것이므로 河野六郎(1940)에서 설명한 것과 반대로 조선 한자음과 수당시대의 운서음의 요소를 잘 분리하면 조선의 현실 한자음도 알 수 있고, 거기에 가미한 수당시대의 운서음의 요소도 알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김주필 2012).

	능히 통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요는 모두 각기 處地에 따라 편안하게 해야만 되고,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禮樂文物이 중국에 견주되었으나 다만 方言과 俚語만이 같지 않으므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旨趣의 이해하
	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3	1) ④옛날에 신라의 薛聰이 처음으로 束讀를 만들어 官府와 民間에서 지금까지 이를 행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모두 글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혹은 艱避하고 혹 은 窒塞하여, 다만 비루하여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서도 그 만분 의 일도 통할 수가 없었다. 2) ⑥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
	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이로써 訟事를 聽斷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4	1) ③獄事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曲折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로워하였다. 2) ⑥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 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가 있으며, 이로써 訟事를 聽斷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5	⑦字韻은 淸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樂歌는 律呂가 능히 화합할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여 구비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울음소리나 개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6	동궁 관련 내용 없음.
	⑧ 이에 臣이 集賢殿應敎 崔恒, 副校理 朴彭年과 申叔舟, 修撰 成三問, 敦寧府注簿 姜希顔, 行集賢殿副修撰 李塏, 李善老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凡例를지어 그 梗概를 서술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되는 것이다. 그 淵源의 정밀한 뜻의 奧妙한 것은 臣 등이 능히 발휘할 수 없는바이다.

Ⅳ. 마무리

〈參考文獻〉

- 강길운(1971), 최만리의 반대상소의 동기에 대하여, <<운현>> 3집(<<개정판 훈민정음과 음 운 체계>>(한국문화사, 1992)에 소수), 덕성여자대학교.
- 강신항(2003a), <<수정증보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강신항(2003b), 正音에 대하여, <<한국어연구>> 1, 한국어연구회, pp. 7-25.
- 김슬옹(2005). <<조선시대 언문의 제도적 사용 연구>>. 한국문화사.
- 김완진(1972), 세종의 어문 정책에 대한 연구, <<성곡논총>>3, 성곡학술재단, pp. 185-216.
- 김주원(2013). <<훈민정음-사진과 기록으로 읽는 한글의 역사>>. 민음사.
- 김주필(1992), 國語 表記史에 있어서 歷史性의 認識, <<語學硏究>> 28-3,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pp. 397-425.
- 김주필(1999),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 <<국제고려학회 논문집>> 창간호. pp.191-230.
- 김주필(2004), 차자표기와 훈민정음 창제의 관련성 재고, <<국어의 역사>>, 보고사, pp. 119~147.
- 김주필(2005), 중국 문자학과 <<훈민정음>> 문자 이론, <<인문과학연구>> 제48호,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pp. 69-103.
- 김주필(2009), 諺文 字母의 反切的 運用과 反切表의 性格, <<한국학논총>> 제32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 491-518.
- 김주필(2012), 훈민정음의 성격과 '전환'의 의미, <<어문학논총>>,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 김윤경(1938/1954), <<조선문자 급 어학사>>, 동국문화사.
- 남풍현(1978), 훈민정음과 차자표기법의 관계, <<국문학논집>>9,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 민현식(2011), 甲子 上疏文의 텍스트언어학적 分析 研究, 『語文研究』151號, 韓國語文教育研究會, pp. 7-42.
- 박성종(2006), 朝鮮 初期 古文書 支讀文 譯註,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종학(1995), <<이두의 역사적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송기중(1997),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성격, <<새국어생활>>제7권 제4호(송기중 외 편, <<한 국의 문자와 문자 연구>>(집문당, 2003) 소수).
- 송기중(1997), 동북아시아 역사상의 제문자와 한글의 기원, <<진단학보>>84(송기중 외 편, <<한국의 문자와 문자 연구>>(집문당, 2003) 소수).
- 안병희(1971), 15세기 한자음 한글 표기에 대하여, <<김형규 박사 송수기념 논총>>, 일조 각.
- 안병희(1985),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창제로부터 19세기까지, 동방학지 제46· 47·48 합집
- 안병희(1990),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대하여, <<강신항 교수 회갑기념 국어학논문집>>, 태학사, pp. 135~145.
- 이기문(1972), <<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 이기문(2008), 訓民正音 創製에 대한 再照明, <<韓國語研究>>5, 韓國語研究會, pp. 5-45.
- 이동림(1970), <<東國正韻 硏究>>, 동국대학교 출판부.
- 이병근(1988), 訓民正音의 初·終聲 體系, <<訓民正音의 理解>>(신상순, 이돈주, 이환묵 공편), 한신문화사.

- 이숭녕(1958.2011), 세종의 언어 정책에 관한 연구, 특히 운서 편찬과 훈민정음 제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1권 제2호, pp. 28-81.
- 이숭녕(1964/2011), 최만리 연구, 이상백 박사 회갑기념 논총, 을유문화사.
- 이숭녕(1976), <<혁신 국어학사>>, 박영문고 101, 박영사.
- 이원명(2011), 여말선초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과 대명외교 추이, <<동북아문화연구>>27, 동북아문화연구재단, pp. 83~102.
- 이현희(1990), 훈민정음,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pp. 615-631
- 정다함(2009), 여말 선초의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에서의 漢語, 漢吏文, 訓民正音, <<한국사학보>> 36.
- 최병선(2009), 최만리 상소의 국어학사적 의의, <<한국언어문화>> 40집.
- 최영선 편(2009), <<한글 창제 반대 상소의 진실>>, 신정.
- 최현배(1922), <우리말과 글에 대하여(6), 제2절 우리말과 글에 대한 우리 선조의 태도 (속)>, 동아일보 1922년 9월 4일자 기사.
- 홍기문(1946), <<정음발달사(하)>>, 서울신문사.
- 홍윤표(2005), 訓民正音의 상형이자방고전(象形而字做古篆)에 대하여, <<國語學>> 46, 國語 學會.
- 황선엽(2004), 최만리와 세종, <<문헌과 해석>> 26, 문헌과 해석사.
- 裘錫圭(2001), <<中國文字學>>, 이홍진 역, 신아사.
- 小倉眞平(1940), <<增訂 朝鮮語學史>>, 刀江書院 刊.
- 河野六郎(1940), 再ひ<<東國正韻>>に就いて, <<東洋學報>> 27-4(<<河野六郎著作集>>2, 平凡社, 1980).
- 河野六郎(1980), The Chinese Writing and its Influences on the Scripts of the Neighbouring Peoples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and Japan, 『河野六郎 著作集』3, 平凡社.